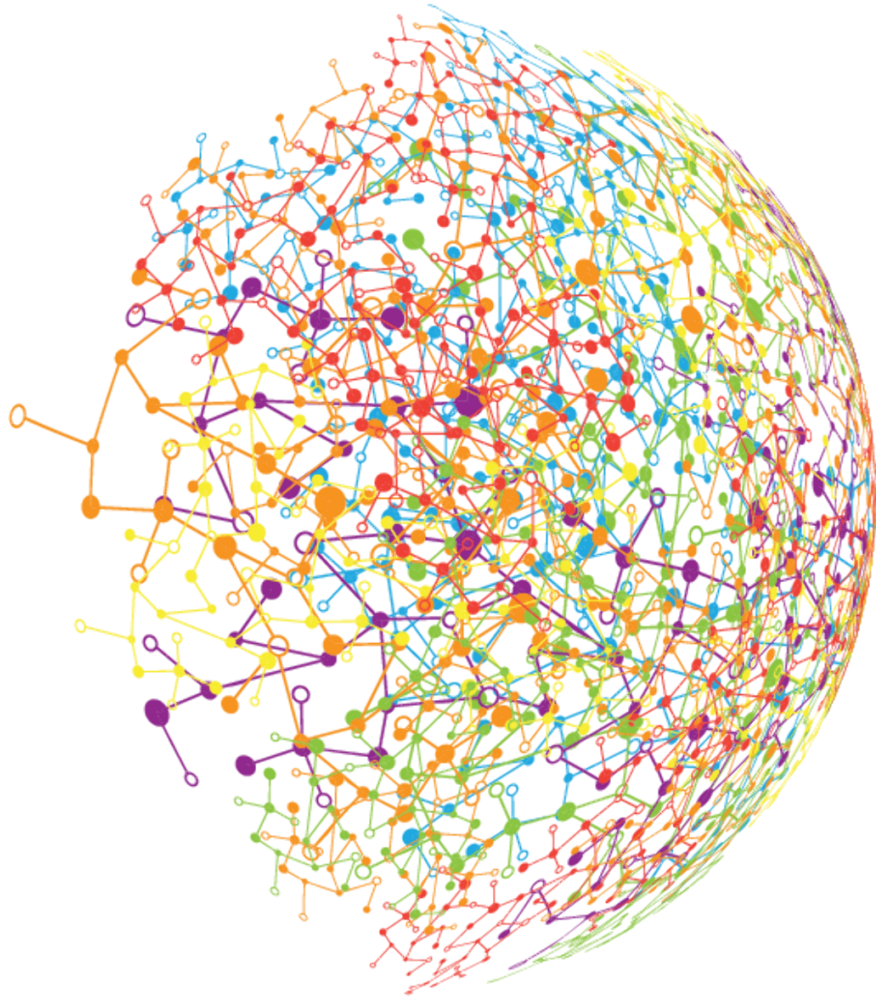




세무뉴스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2020 년 4 월

사회 경제적 상황

Covid-19 의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확산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획투자부의 2020 년 1 분기 사회 경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 년 1 분기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3.82%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 10 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지속적인 사업 및 생산활동을 위해 유동성, 운전자본 부족, 채무 재조정, 효과적인 관리 방식, 비용 절감등을 추구하는 조직과 기업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다.

Covid-19 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0 년 03 월 04 일 제 11/CT-TTg 호 지시서("제 11 호 지시")를 발행하여 Covid-19 상황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특히 조세 정책을 관련 정부부처에게 긴급히 연구,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관련 정부부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대책을 정부에 제안해 왔다.

본 뉴스를 통해 딜로이트는 정부 및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대책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드리고자 합니다:

- (i) Covid19 영향을 받은 기업, 실업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 (ii) 기업의 행정 절차 및 비용 절감;
- (iii) 토지 임대료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 (iv)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환 기한조정; 이자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대출그룹 분류 유지를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에 요청;
- (v) 법인세법상 인정 이자비용의 한도에 대한 제 20/2017/NĐ -CP 호 시행령 개정안 초안

정부의 지원대책

Covid19 영향을 받은 기업, 실업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2020 년 4 월 10 일 정부는 Covid-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VND 62 조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 42 호/NQ-CP 호 결의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7 개 대상 그룹에 해당하는 약 2 천만명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지원수준 및 형식
Covid-1 의 영향으로 급여지급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계약직 근로자로서 고용이 중단되거나 1 개월 이상의 무급휴가 조치가 취해진 경우	VND 1.800.000/명/월 (지원기간은 실제 고용 중단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원금은 Covid-19 상황에 따라 2020 년 4 월 01 일부터 월별로 지급되며 그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법 제 98 조 제 3 항에 따라 2020 년 4 월부터 6 월까지의 기간 중 고용 중단된 근로자에게 최소 50%의 급여를 지급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고용주	고용주들은 사회정책은행에서 0% 이자율과 담보없이 최대 12 개월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1 인당 지역 최저임금의 최대 50%를 한도로 고용 중단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간 과세매출 VND 1 억 미만으로 2020 년 4 월 1 일부터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개인, 가족 사업자	VND 1.000.000/가족사업자/월 (Covid-19 상황에 따라 2020 년 4 월 01 일부터 월별로 지급되며 그 기간은 3 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 취소되었지만 실업 수당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근로계약 이전에 직업을 잃은 근로자	VND 1.000.000/명/월 (Covid-19 상황에 따라 2020 년 4 월 01 일부터 월별로 지급되며 그 기간은 3 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혁명 보훈자로 현재 월 보조금을 받는 사람; 사회보장 대상자로 월 사회보조금을 받는 사람	VND 500.000/명/월 추가 보조금 (2020 년 4 월부터 6 월까지 기간 중 1 회 지급)
2019 년 12 월 31 일 기준 전국 기준 빈곤층, 차상위 빈곤층 해당 대상자	VND 250.000/명/월 (2020 년 4 월부터 6 월까지 기간 중 1 회 지급)
Covid-19 대유행(Pandemic)이 공표되기 전과 비교해 업무정지, 근로계약 일시 연기 또는 무급휴가등으로 인해 50%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를 중단하게 된 고용주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납부를 최대 12 개월을 한도로 일시 중단 가능 (고용주 및 근로자 부담분 모두에 적용)

결의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2020 년 4 월 1 일부터 대유행(Pandemic)의 종료가 공표될 때까지 현지 인민위원회의 해당 지역 질병 발병 내역에 대한 확인없이 우편을 통해 실업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월 구직상황 보고는 간접적인 방식(이메일, 팩스, 우편등)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의 행정관리 절차 및 비용 절감

제 11/CT-TTg 호에 따라 정부는 재무부에 조세당국 및 관세당국에 아래와 같이 지시하도록 요청했다:

- 위반 징후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 년 정기 세무감사/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며, 동시에 기업이 이점을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게함;
- Covid-19 영향을 받은 납세자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연장, 세금환급, 통관등과 같은 행정절차 단순화 및 실행을 가속화함.

이에따라 2020 년 3 월에 세무총국은 현지 세무국에 Covid-19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 세무 감사/조사 실행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납세자 현장 세무감사.조사 실행전 사전 준비 업무에 집중한다: 납세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납세자 현장 세무감사.조사시간을 단축한다;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세무 감사.조사 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
- 세무 리스크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감사,조사를 집중적으로 실행한다.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기업의 경우 세무 감사.조사를 실행하기 전에 세무 리스크를 분석하여 상위 조세당국에 보고 하여 세무감사, 조사 계획을 수정한다.
- 상위 조세당국에 의해 지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되지 않은 세무감사.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 세무 공무원들은 세무감사.조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전자화된 세무감사.조사 내역을 완전하게 작성해야 한다.

세금 및 토지사용료 납기 연장에 대한 시행령

정부는 2020 년 4 월 8 일 제 41/2020/ND-CP 호 시행령을 발표하여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업체들에 세금 및 토지사용료 납기를 연장하였다. 시행령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적용 대상 및 범위:

- 다음과 같은 경제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기업, 개인 및 가족사업자 (지점과 독립적인 시설 포함):

(i) 생산분야:

- 농업, 임업 및 수산업
- 식품 제조 및 가공, 직조.의류 생산; 가죽 및 관련제품의 제조;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코르크 생산; 짚 및 격자재 제조,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생산;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의 생산; 금속 제조, 가공; 금속 처리 및 코팅;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제조;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가구생산.
- 건설업

(ii) 산업 분야:

- 운송 및 창고 및 관련 지원활동; 숙박 및 catering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의료 및 사회 지원 활동; 부동산 활동;
- 취업활동; 여행사들의 활동, 관광투어 개최 및 홍보와 관련된 지원서비스;
- 창작예술 및 오락활동, 스포츠 활동; 동물원, 식물원 및 자연 보호구역의 활동; 놀이 공원 및 테마 파크 활동, 영화 상영 활동.
- 주요 기계제품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개인 및 가족사업자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기업, 개인 및 가족사업자인 고객들을 위한 지원조치를 실행하는 신용기관, 외국계 은행 지점. 중앙은행은 해당 신용기관, 외국 은행지점의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2. 납부기한 연장은 법인세 ("CIT"); 부가가치세 ("VAT"); 개인소득세 ("PIT") 및 토지임대료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 법인소득세 ("CIT")의 FY 2019 확정신고 및 FY 2020 1 분기, 2 분기의 CIT 납기를 5 개월 연장한다. (확정신고금액을 납부한 경우 기타 세금의 납부해야 할 금액과 상계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VAT")의 3 월에서 6 월까지 신고 (월 신고의 경우) 및 FY 2020 1 분기 및 2 분기 (분기 신고의 경우)의 납부기한은 5 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2020 년 12 월 31 일 기한);
- 2020 년에 발생한 개인소득세 ("PIT")의 납부기한은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되며 개인, 개인단체 및 가족사업자에 적용된다;
- 토지 임대료의 2020 년 최초 납부액의 납부기한을 5 개월까지 연장한다. (2020 년 10 월 31 일 기한).

3. 납기 연장 신청절차

- 대상 사업자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세금 납기 연장 신청서를 월간/분기별 신고와 동시에 또는 2020 년 7 월 30 일까지 조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조세당국은 토지 임대료 및 세금 납기 연장 신청을 받은 이후 납세자에게 적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다. 대신 조세당국은 연장기간동안 납세자가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연장가능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납부연장 불가를 통지하고 세금 및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 납기연장 기간 동안 (납세자의 납기연장 신청서에 근거) 연장된 토지 임대료 및 세금에 대한 지연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Covid-19 영향을 받은 고객 지원을 위한 신용 기관, 외국계 은행 지점의 대출금 상환일정 조정, 대출이자 및 수수료 면제 및 감면, 대출그룹 분류 유지

2020 년 03 월 13 일 베트남 국가 은행은 Covid-19 영향을 받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기관, 외국계 은행 지점들의 대출금 상환일정 조정, 대출이자 및 수수료 면제 및 감면, 대출그룹 분류 유지를 요청하는 제 01/2020/TT-NHNN 호 시행규칙("제 01 호 시행규칙 ")을 발행했다.

제 01 호 시행규칙의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출상환 일정 조정:** 신용 기관과 외국계 은행 지점은 제 01 호 시행규칙 제 4 조에 근거해 고객의 요청 또는 자체 기준에 따라 Covid-19 영향 정도에 따른 고객사의 원금 및 이자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상환 일정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 **이자 및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신용 기관 , 외국계 은행 지점은 회사채 투자활동을 제외한 대출 잔액 중 2020 년 01 월 23 일부터 수상이 Covid-19 대유행(Epidemic) 중단을 발표한 날로부터 3 개월 이후까지의 기간에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예정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Covid-19 으로 인해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없게된 고객에게 적용된다.
- **대출분류그룹 유지:** 신용 기관, 외국계 은행 지점은 제 01 호 시행규칙 에 따라 2020 년 01 월 23 일 이전 대출금액으로써 상환일정 조정, 이자 면제 및 감면 된 미상환 대출금액(2020 년 01 월 23 일부터 제 1 호 시행규칙 발효일로 부터 15 일 사이에 베트남 국가 은행 규정에 따라 상환 일정 조정 된 대출, 이자 면제 및 감면, 조정된 대출그룹 포함)에 대해 베트남 국가 은행 규정에 따른 대출분류그룹을 유지 가능하다.

많은 상업은행들이 제 01 호 시행규칙에 따라 Covid-19 로 인해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여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기한내에 상환할 수 없게 된 고객들에게 이자 및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었다. 따라서 회사는 베트남 국가 은행의 규정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정책 신청을 고려 할 수 있다.

제 20/2017/ND-CP 호 시행령 하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규정 개정

재무부는 정부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제 20/2017/ND-CP 호 시행령 제 8 조 3 항 개정하는 시행령초안을 제출했다. 시행령 초안은 해당 규정 적용 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시에 Covid-19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초안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순이자비용의 한도가 EBITDA 의 20%에서 30%로 증가
- 순이자 = 총 이자비용에서 당기 은행예금 및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당기 한도를 초과한 순이자비용의 경우 당기 이후 순이자비용이 EBITDA 의 30% 미만인 경우 5 년까지 이월 가능하다.
- 동 시행령은 신용기관, 보험사, 공적 개발원조, 정부에서 교부하는 양허대출, 국가목표 프로그램을 위한 융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사업 투자대여금인 납세자의 대출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개정 시행령은 서명일자 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FY 2019 년 법인세 최종신고 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기 승인사항 이외에 본 규정을 FY2017 및 FY2018 에 소급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 *

Deloitte Vietnam 의 의견

지금은 모든 조직, 기업, 경제 전반에 대한 위협과 어려움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모든 직원, 고객, 협력사,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기업마다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위해 여러가지 적극적인 해결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Deloitte 은 상기 지원방안들이 현재 Covid-19 상황에 따른 긴급정책으로써 향후 Covid-19 진행 상황에 따라 정부와 각 부처가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및 평가하여 규정 공식 발효시 적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Deloitte 는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Deloitte Vietnam 은 Deloitte Southeast Asia 와 함께 기업의 Covid-19 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그룹을 설립하여 유동성 분석, 운전자본 부족, 부채구조 조정과 같은 긴급 현안 또는 Covid-19 와 관련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모색, 비용 절감, 계약조건 관련한 리스크 검토 및 관리등을 지원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Contact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3910 0751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0 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0 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3910 0751

hoangphan@deloitte.com

Dinh Thi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0 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3910 0751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3910 0751

avo@deloitte.com

Vu Thi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0 023

ngavu@deloitte.com

Website: 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 legal and related services.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312,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 Chi Minh City,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Tokyo and Yangon.

About Deloitte Vietnam

Deloitte Vietnam, a pioneer in the Advisory and Audit industry with nearly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Vietnam market, is part of the Deloitte Global network, one of the Four largest professional services organisations in the world. Our clients are served by over 1,000 staff located in our Hanoi and Ho Chi Minh City offices with access to the full strength of our Deloitte Asia Pacific member firms. Through our extensive network, Deloitte Vietnam delivers value-added services in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 Corporate Governance, Tax & Legal, Consulting, Audit & Assurance and Professional Training Services to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